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 황정아·박범계·조승래

장철민 • 박정현 • 장종태

박용갑 • 차지호 • 박지혜

백승아 · 김남근 · 윤종군

박균택 · 김기표 · 김용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사회 및 문화정 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인력·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2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교육부장관이 겸임
<u>임하는 부총리</u> 및 제26조제1항	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	제19조(부총리) ①
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 을 둔다.	<u>3</u>
	<u>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③ <u>기획재정부장관,</u>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
	<u>신부장관</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u>
	<u>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u>
	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
	<u>괄·조정한다.</u>
제	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교육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_,